

고

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77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(서귀포중앙 등 2개소)

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중앙 등 2개소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(사업기간)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4월 3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업개요

사업명칭	소재지	사업면적 (㎡)	대지면적 (㎡)	사업규모	사업기간	
					당초	변경
서귀포중앙 공공주택건설사업 (행복주택)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269-4번지 일원	1,706.30	1,706.30	아파트 1개동 (행복주택 80세대, 9층 이하) 및 공공업무시설	사업승인 고시일 ~ 2024. 03.	사업승인 고시일 ~ 2024. 06.
제주일도이동 공공주택 건설사업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161번지 일원	2,917.40	2,917.40	아파트1개동(행복주택 120세대, 9~10층) 및 부대복리시설, 공공청사	사업승인 고시일 ~ 2024. 03.	사업승인 고시일 ~ 2024. 06.

※ 변경내역 : 사업기간 변경. 끝.